

## 결의안 제2호

## 헌장개정위원회의 위원장직 승계 순서를 정하는 결의안.

2024년 12월 12일, 뉴욕시 시장은 뉴욕주 지방자치법 제36(4)절에 따라 헌장개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뉴욕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Richard R. Buery, Jr.를, 부위원장으로 Sharon Greenberger를, 서기로 Leila Bozorg를 임명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장 부재 시에도 헌장개정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인 Sharon Greenberger가 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할 것을 임명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인 Sharon Greenberger가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6절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헌장개정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장의 모든 직무와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합니다.

날짜: 2025년 1월 7일